

새해에 바뀌는 산업재산권 의장권 존속기간 8년에서

◎ 법률 제4,594호

특허법중 개정법률

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중 “청구·신청이나 신청의 취하”를 “청구의 취하, 신청의 취하”로 한다.

제16조 제1항중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은 자”를 “특허권의 설정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24조중 “전 기간”을 “모든 기간”으로 한다.

제29조 제3항 본문중 “특허출원을 한 날전에 특허출원하여”를 “특허출원을 한 날전에 특허출원 또는 실용신안 등록출원을 하여”로 한다.

제30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발명이 제2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38조 제7항중 “제2항 및 제6항”을 “제2항·제3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47조 제1항 제2호중 “그 우선권주장일”을 “그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일”로

한다.

제52조 제2항 제3호중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54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분할출원에 있어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분해출원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 제2항 제3호중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을 “제54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변경출원에 있어서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출원을 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61조 및 제8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61조(우선심사) 특허청장은 출원공개후 출원공고 전에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안정되거나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심사관으로 하여금 다른 특허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게 할 것이다.

제84조(특허료 등의 반환)

①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1. 잘못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

2. 특허를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3.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의 특허료 해당분.

② 제1항 제1호의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납부된 날부터, 동항 제2호 및 제3호의 특허료 해당분의 반환은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각각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98조중 “등록의장”을

관련 법률

10년으로 개정 등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으로 한다.

제102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은 통상실시권자”를 “통상실시권자”로 하고, 동조 제7항중 “제99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99조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109조의 제목, 동조본문, 제117조의 제목, 동조 제1항 및 제2항중 “공업소유권 심의위원회”를 각각 “산업재산권 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19조 제1항중 “제102조 제2항”을 “제102조 제1항”으로 한다.

제122조의 제목 “(질권경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을 “(실권행사로 인한 특허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경락되더라도”를 “경매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로, “질권자”를 “경매등에 의하여 특허권을 이전받은 자”로 한다.

제136조 제8항 중 “제102조 제2항”을 “제102조 제1항”으로 한다.

제138조 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으로 한다.

제159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심판에서는 청구인이 신청하지 아니한 청구의 취지에 대하여는 심리할 수 없다.

제162조 제5항 중 “제1항”을 “제3항”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를 “한다”로 한다.

제170조 제1항 및 제174조 제2항중 “제50조”를 각각 “제47조 제2항 제3호·제50조”로 한다.

제187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33조 제1항·제134조 제1항·제135조 제1항·제137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에 대한 상고제기에 있어서는 그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을 피고로 하여야 한다.

제19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닌 자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표자로 하여 국제출원을 하는 자

제193조 제3항 제5호중 “성명이나 명칭”을 “성명”으로 한다.

제194조 제2항중 “보정할”

을 “보완할”로 하고, 동조 제4항중 “보정명령”을 “보완명령”으로, “보정을”을 “보완을”로, “보정에”를 “보완에”로 한다.

제208조 제3항중 “출원서”를 “특허출원서”로 한다.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특허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특허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특허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특허료의 반환에 관한 제8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된다.

◎ 법률 제4,595호

의장법중 개정법률

의장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및 제2항중 “고안”을 각각 “창작”으로 한다.

제8조 제1항 제2호를 다음

과 같이 한다.

2. 의장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장에 반하여 그 의장이 제5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9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5호중 “고안”을 “창작”으로 하며, 동항 제6호 및 동조 제5항을 삭제한다.

4.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9조 제2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2호중 “고안의 요지”를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한다.

1. 의장의 대상이 되는 물품

제16조 제4항 중 “고안”을 “창작”으로 한다.

제19조 제2항 단서중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중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은 최초에 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 장등록 출원의 사정 또는 심결이 확정된 후에는 할 수 없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출원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유사의 장등록 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본다.

제21조 제2항 단서중 “제23조 제2항 및 제3항”을 “제23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26조 제1호중 “제16조 제1항”을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6조(등록료등의 반환)

①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1. 잘못 납부된 등록료 및 수수료

2. 의장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년도의 다음 년도부터의 등록료 해당분

② 제1항 제1호의 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은 그 납부된 날부터, 동항 제2호의 등록료 해당분의 반환은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제40조 제1항중 “8년”을 “10년”으로 한다.

제41조 단서 및 제46조 제3항중 “그 등록의장을”을 각각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 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받은 통상실시권자”를 “통상실시권자”로 하고, 동조 제3항중 “제46조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46조 제2항·제3항”으로 한다.

제50조중 “고안하거나”를

“창작하거나”로 “고안한”을 “창작한”으로 한다.

제52조중 “특허법 제118조 제1항 및 실용신안법 제28조 제1항”을 “특허법 제118조 제1항”으로, “당해 의장권·특허권·실용신안권”을 “당해 의장권 또는 그 특허권·실용신안권”으로 한다.

제5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8조(질권행사로 인한 의장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실시권) 의장권자는 의장권을 목적으로 하는 의장설정 이전에 그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의장권이 경매등에 의하여 이전되더라도 그 등록의장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의장권자는 경매등에 의한 의장권을 이전받은 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61조중 “특허법 제106조”를 “특허법 제101조·제106조”로 한다.

제63조중 “등록의장”을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으로, “전용실용권”을 “전용실시권”으로 한다.

제68조 제1항 제1호중 “제16조 제1항”을 “제16조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70조 제4항중 “등록의장”을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으로 한다.

제8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6조(비밀누설죄 등) 특허청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가 의장등록출원중인 의

장 또는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할 것을 청구한 의장에 관하여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때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의장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의장권 및 의장등록출원되어 설정되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제40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의장등록료 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의장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의장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의장등록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의장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제36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법률 제 4,596호

실용신안법중 개정법률

실용신안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중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전에 실용신안등록 출원하여”를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한 날전에 실용신안등록출원 또는 특허출원

을 하여”로 한다.

제5조 제1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고안이 제4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0조 제2항 제3호중 “특허법 제54조 제3항 및 제4항”을 “특허법 제54조 제3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변경출원에 있어서 특허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권을 주장하는 자는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동조동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변경출원한 날부터 3월이내에 특허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25조중 “등록의장”을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으로 한다.

제26조 제1항 제5호 단서중 “제28조 제2항”을 “특허법 제118조 제2항”으로 한다.

제28조를 삭제한다.

제29조중 “제106조 내지 제117조 및 동법 제119조 내지 제125조”를 “제106조 내지 제125조”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실용신안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실용신안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실용신안등록료의 반

환에 관한 적용례) 실용신안등록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실용신안등록료의 반환에 관하여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권 제84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 법률 제4,597호

상표법중 개정법률

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8호중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동항동호단서를 삭제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제1항 제8호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등록상표가 상표권이 소멸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등록상표가 제1항 제6호·제9호 및 제10호, 제8조 또는 제73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위반한 것을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후 그 정당한 출원인이 상표등록출원한 경우

3.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이 되지 아니한 채 제43조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6월의 기간이 경과된 경우

제8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7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을 사유로

하는 등록상표의 취소심판에 있어 그 청구일 이후에 상표권자가 상표권 또는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상표등록 취소의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포기한 날 또는 그 심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간은 취소 심판청구인만이 소멸된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출원하여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 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일부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23조 제2항·제45조 제2항 또는 제4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제출기간내에 보정할 수 있다.

제16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특허법 제49조 및 제50조 제3항의 규정은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보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43조 제2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38조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상표등록료 및 수수

료가 잘못 납부된 경우에는 그 납부된 날부터 1년이내에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반환한다.

제42조 제2항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 제1호 및 제2호를 삭제한다.

다만, 그 등록상표가 제6조 제1항각호의 1(제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제1항 제3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 제4항중 “대통령령”을 “상공자원부령”으로 한다.

다만, 이 기간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하지 아니한 자는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만료후 6월이내에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을 할 수 있다.

제45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의 상표가 당해 등록상표와 동일하지 아니한 경우.

6.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의 지정상품을 당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아닌 상품으로 하거나 그 지정상품이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상품류구분에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54조 제3항중 “일간신문”을 “일간신문 또는 상공자원부령이 정하는 간행물”

로 한다.

제76조 제1항중 “제8조·제42조 제2항 제2호”를 “제8조”로 한다.

제86조 제2항후단중 “제135조 제1항 및 제137조 제1항”을 “제135조 제1항·제137조 제1항 및 제138조 제1항”으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상표등록출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대한 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 (상표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상표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등록상표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상표등록출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 등록출원 및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상표에 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審判便覽

국판(25절), 642면,
특허청편, ₩ 11,000